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항제7호 중 “정보처리”를 “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처리”로, “정리·보관 및 활용”을 “정리·보관·활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정보자원 관리 및”을 “데이터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
8의3.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별표 3 중 총계 “311”을 “31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08”을 “31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 다음에 “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”를 신설한다.

별표 3의2 중 총계 “318”을 “32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15”를 “317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 다음에 “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⑥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⑦ ----- ----- 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정보처리</u> 관련자료의 <u>정리 · 보관 및 활용</u> 의 총괄	7. <u>정보자원</u> 관리 및 정보처리 ----- <u>정리 · 보관 · 활용</u> -----
8. <u>정보자원</u> 관리 및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	8. <u>데이터</u> 등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8의2. <u>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· 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
<u><신 설></u>	8의3. <u>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</u> 를 위한 <u>계획 수립 ·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
9. ~ 13. (생 략)	9. ~ 13. (현행과 같음)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11</u>	<u>313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08</u>	<u>310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			
임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			
·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			
연구관	29		
<u>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또는 통계사무관</u>			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3의2]

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18</u>	<u>320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15</u>	<u>317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 연구관	29		
<u>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·	·	·	
·	·	·	